

예 산 총 칙

202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1,279,013,060	338,370,392
일반회계		10,097,342,896	302,920,287
특별회계		1,181,670,164	35,450,105
	기타특별회계	1,181,670,164	35,450,105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3,505,536	105,166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46,348,222	1,390,447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6,709,045	201,27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98,446,085	17,953,38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223,485	36,705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775,670	173,270
	소방특별회계	519,204,421	15,576,133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	457,700	13,73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확정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2,365,79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98,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